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571

발의연월일: 2024. 8. 5.

발 의 자:김현정·김남근·김동아

김한규 • 민병덕 • 민형배

박 정 • 박해철 • 박희승

송재봉・양문석・이기헌

이병진 · 임미애 · 정성호

채현일 · 허성무 의원
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이로 인해 이사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간의 이해충돌로 인해 주주간에 부(富)의 이전이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한 경우 이는 주주간의 문제일뿐 이사는 주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손해회복을 위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.

또한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수단으로 부 상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없이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. 이에 이사에게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부여하고,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책을 줌으로써 소수주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382조의3, 안 제401조 및 안제401조의2).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2조의3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2조의3(이사의 충실의무 등)

-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가 있다.
- ③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가 제2항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. 다만 이 경우 소수주주가 올바른 판단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.

제40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第399條第2項, 第3項"을 "제382조의3제2항, 제399조제2항 및 제3항"으로 한다.

제401조(제3자에 대한 책임)

제401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"제399조"를 "제382조의3제2항, 제399조"로 한다.

제401조의2(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)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382條의3(理事의 忠實義務) (생	제382조의3(이사의 충실의무 등)
략)	<u>①</u>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
	음)
<u><신 설></u>	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
	있어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
	<u>무가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③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및
	그의 특수관계인은 의결권을
	행사하지 않고 소수주주만으로
	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
	가 제2항의 의무를 다한 것으
	로 본다. 다만 이 경우 소수주
	주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
	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
	<u>야 한다.</u>
第401條(第3者에 對한 責任) ①	<u>제401조(제3자에 대한 책임)</u>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<u>第399條第2項, 第3項</u> 의 規定	② 제382조의3제2항, 제399조제
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.	<u> 2항 및 제3항</u>
第401條의2(業務執行指示者 등의	제401조의2(업무집행지시자 등의
責任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	책임) ①
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	

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, 제401조,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는 그 자를 "이사"로 본다.

- 1. ~ 3. (생 략)
- ② (생 략)

제382조의3제2항, 제399조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